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65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송기현 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4. 6. 19.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생략)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u>조사하여야 한다.</u>	② ----- ----- ----- ----- <u>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④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현행	개정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③ (생략)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방법·기준 및 결과보고서 공개----- -----.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¹⁾ 일반에 공개할 경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결과보고서에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위치 정보·군용항공기 운항 실적·화기 사격 발수·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항적 등을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 전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경우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형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참고자료 1 참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1)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시행된 이후 2021년 12월에 총 138개소(비행장 43, 사격장 95)에 대하여 첫 결과보고서가 작성·발간되었음(5년 단위 발간). 이 결과보고서는 현재 일반에 공개된 바 없음.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② 국방부장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했을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을 작성

(참고자료 2 참조)

- 현재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근처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www.eum.go.kr) 및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을 통하여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³⁾

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

-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는 소음대책지역의 해당 세대주에게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⁴⁾

소음대책지역에 근접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본인 주거지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보상 실시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실질적인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대책지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소음대책지역 확인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동 개정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 확인 편의성 제고 수단으로 결과보고서의 일반인 공개를 규정하고 있음.

결과보고서에는 군용항공기 및 군용화기 제원, 소음측정 위치, 소음 측정 빈도, 소음등고선(지도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일반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간공항과 같이 소음등고선을 통하여 소음대책지역이 어떤 지역에 걸쳐서 지정될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음. (참고자료 3 참조)

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하는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지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다만, 결과보고서가 대외비가 아닌 일반문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위치, 군용항공기의 제원 등 결과 보고서에 수록된 군 관련 정보가 대부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위치를 정부 공식문서로서 공개한 것이 되며, 전체 소음등고선의 확인을 통해 군용항공기의 항적이 유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3년 1월부터 군소음포털을⁵⁾ 구축하여 주민들이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참고자료 4 참조)

결과보고서는 군사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⁶⁾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 부동의 한다는 입장임.

5) <https://mnoise.mnd.go.kr>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국방부장관 고시 예시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군용 비행장별 위치 및 면
2. 군사격장별 위치 및 면적
3.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로 별도로 송부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18.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
제1종구역	95WECPNL이상	시 구 동	0.008594
		시 구 동	0.015709
제2종구역	90WECPNL이상	시 구 동	0.012477
	95WECPNL미만	시 구 동	0.033625
제3종구역	80WECPNL이상	시 구 동	0.014907
		시 구 동	0.056244
	90WECPNL미만	시 구 동	0.149598

19.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
제1종구역	95WECPNL이상	시 동	0.080896
제2종구역	90WECPNL이상	시 동	0.027435
	95WECPNL미만	시 동	0.15312
제3종구역	80WECPNL이상	시 면	0.036655
		시 면	0.004003
	90WECPNL미만	시 동	0.477000
		시 동	0.528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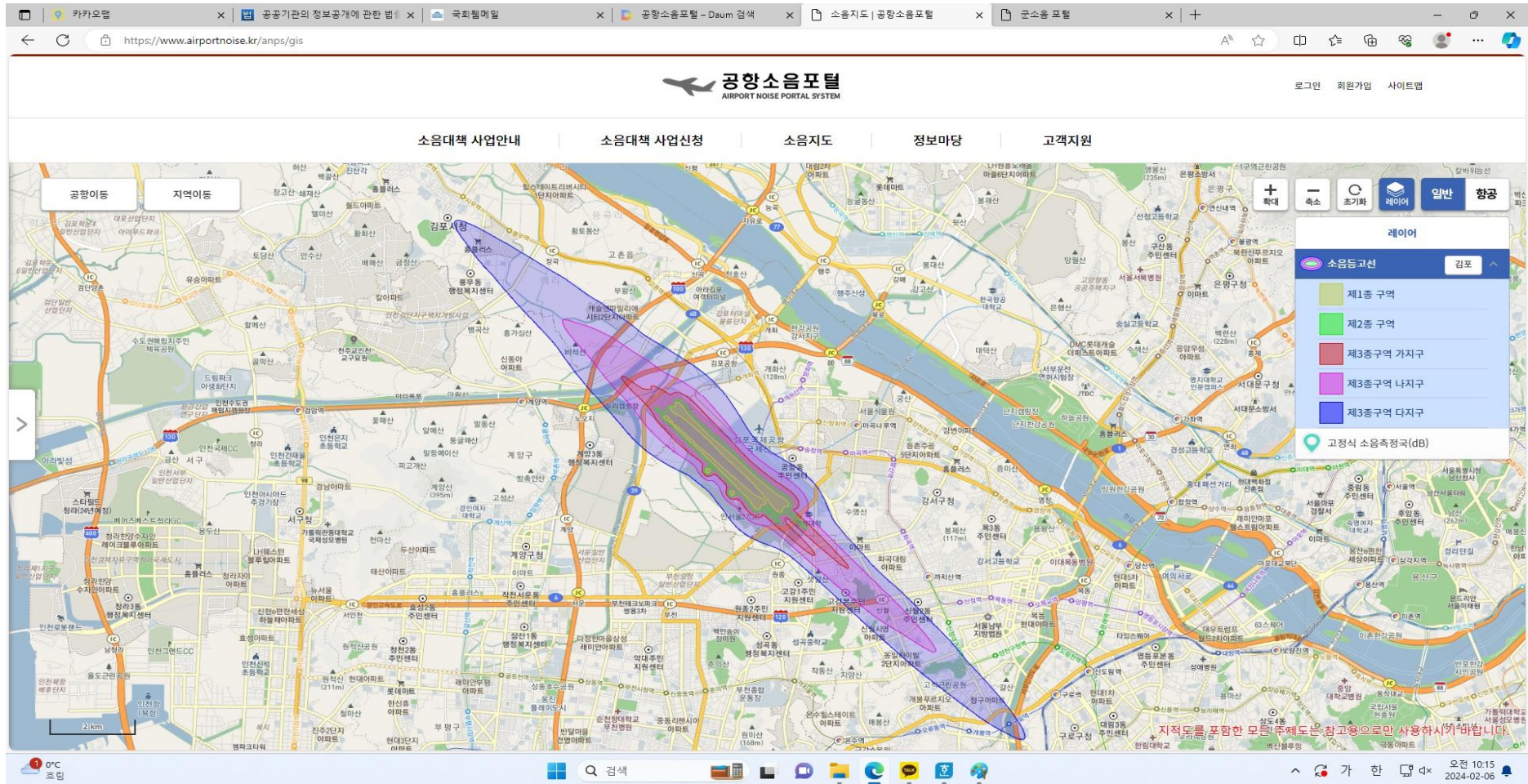
20.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
제1종구역	95WECPNL이상	군 읍	0.111218
제2종구역	90WECPNL이상	군 읍	0.181341
	95WECPNL미만		
제3종구역	80WECPNL이상	군 읍	1.377638
	90WECPNL미만		

2. 국토이용정보체계 예시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7-7번지		
지목	대	면적	944 m ²
개별공시지가 (m ² 당)	1,327,000원 (2023/0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북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큰솔유치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확인도면		법례 ☐ 도시지역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1종구역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 ☐ 준보전산지 ☐ 소로3류(폭 8m 미만)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철도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 법정동	
유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척1 / 1200	

3. 공항소음포털(<https://www.airportnoise.kr>)



4.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Mnoise.mnd.go.kr website with a confirmation pop-up titled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Noise Countermeasure Area Eligibility Confirmation Result). The pop-up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도로명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58번길 51 (평동)
지번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47-15
조회 주소(건물번호)	건물 관련 의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58번길 5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47-15)	[수원비행장] 비행장의 제1종구역으로 예상됩니다.

Below the table, there are three bullet points:

- 해당조회 내용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예상 결과 입니다.
- 보상지급관련은 관할 지자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작성, 군소음관련법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닫기" (Close)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of the pop-up.

The background website shows the "군소음 포털" (Mnoise Portal) with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The bottom of the page feature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with various links and a "가 한" (Go Home) button.